

2014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 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나. 사업 예산 : 총 6억원

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참고1)	<p>[기술사업성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평가 <p>[재무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 가능성 분석)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6일, 최대 240만원 지원

분야	최근1년 내 건강진단 미수행한 경우		최근1년 내 건강진단 수행한 경우	
	일수	보수액	일수	보수액
재무분석	3일	150만원	3일	150만원
사업성 분석	3일	90만원	1일	30만원

- *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강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무분석을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중진공 건강진단보고서를 참조하여 기술사업성 평가를 동시수행가능
- * 컨설팅 부가가치세(비율 10%)는 기업이 부담

마. 진행절차



- * 지원 대상(조건)에 포함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신청가능

< 구조개선 필요기업 >

- ▶ 자구적으로 경영위기 극복이 가능한 기업
- ▶ 사업 전환, 긴급경안자금,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상담

< 사업정리 필요기업 >

- ▶ 폐업, 파산, 재기교육(힐링캠프),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 회생계획인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 조기에 법원의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컨설팅을 지원
- ▶ 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의 경우 '14년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2 신청 및 접수,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기간 : '14. 3. 17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 회망기업은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하여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다. 지원 및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퇴출권고 등 진로제시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처방받은 중소기업
- 아래 1건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헤고기업
 -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부실 및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 이자비용)인 기업
 - * 6개월 이내 차입금 원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자(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기업)

라. 신청기업 유의사항

- 진로제시컨설팅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기업의 진로를 제시
 - 자구적 위기극복 가능기업에 대해 연계지원방안을 안내하고,
 - 회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업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정리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통해 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돋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 진로제시컨설팅, 기업회생컨설팅 :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마.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재도전설장과	(전화) 042-481-6846 (팩스) 042-481-6849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전환지원센터	(전화) 02-769-6801, 6804 (팩스) 02-769-6665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문의) 02-769-6664 (메일) jaegi@sbc.or.kr	주관기관
콜센터		1661-1357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참고3 : 연락처 참조)

- 참고 1.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업종
2. 신청서 서식 (온라인 신청)

<참고1>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업종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①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커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커금속 도매업(46492)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 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별지1호 서식]

접수번호 : _____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본사□공장)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표준산업 분류코드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명	
재무현황 (가장최근년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억	억	억	억	
대표자 연락처	성명:	직위:	전화: () -		
	E-mail:		휴대폰: () -		
기업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위:	전화: () -		
	E-mail:		휴대폰: () -		
신청동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불임 : 최근1년간 재무제표 1부,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작성요령

◦ 기 업 명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 □□기업)
◦ 설립일자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소 재 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재
◦ 재무현황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종업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표준산업 분류코드	주관기관(중진공) 담당자가 기재 (신청인이 모를 경우, 기재 생략가능)
◦ 신 청 인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별지1-1호]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항목	내용	해당 여부
지원 대상 업종 확인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계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2.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6.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7. 건설업(F)	-
	진단신청 대상 업종 1~7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처방전	■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로제시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은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경영 위기 기업	■ 아래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여부 (<u>“예” 일 경우 우측 체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 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기업 ▪ 보증연체, 부실등록 기업 및 구상채권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자보상배율 10이하(영업이익 < 미자비용)거나, 미자비용이 연체된 기업 *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1-2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중소기업청장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재무제표 및 기타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신용)정보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컨설팅 지원에 필요한 서류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삼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기업 대표)

중소기업청장 귀하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기업청, 진로제시컨설팅 주관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201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3>

신청·접수시 문의 및 연락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복동)	02)6678-4112	충북 (청주시)	043)230-6818	전남 (무안군)	061)280-8041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2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12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44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23	전북 (전주시)	063)210-9912	부산 (사상구)	051)630-7431
인천 (연수구)	032)450-0533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31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4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75	대구 (대구시)	053)601-5295	울산 (울산시)	052)703-1132
경기 (수원시)	031)259-7906	경북 (구미시)	054)476-9330	경남 (창원시)	055)212-1373
경기동부 (광주시)	031)259-7885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2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25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472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32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4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34	강원 (춘천시)	033)259-7635	제주 (제주시)	064)751-2053
대전 (대전시)	042)866-0127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3		
충남 (천안시)	041)621-3675	광주 (광주시)	062)600-3031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진로제시 컨설팅 담당	기업회생 컨설팅 담당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충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옹진군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충남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삼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